

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|
| 전문개정 | 2000. 12. 28 | 조례 제1223호 |
| 개정 | 2001. 7. 26 | 조례 제1255호(행정기구설치조례) |
| | 2003. 11. 18 | 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 |
| | 2006. 12. 15 | 조례 제1480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 |
| | 2008. 6. 16 | 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 |
| | 2008. 8. 11 | 조례 제1603호 |
| | 2010. 11. 25 | 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1. 8. 9 | 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3. 10. 8 | 조례 제1967호 |
| 일부개정 | 2014. 8. 14 | 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6. 12. 20 | 조례 제222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7. 10. 10 | 조례 제2300호(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8. 7. 31 |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8. 8. 30 | 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19. 11. 15 | 조례 제2556호 |
| 일부개정 | 2019. 12. 20 | 조례 제2560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22. 3. 2 | 조례 제2840호(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) |
| 일부개정 | 2022. 11. 22 | 조례 제2903호 |
| 일부개정 | 2024. 11. 12 | 조례 제3175호 |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,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22. 3. 2>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24. 11. 12>

1. 일반회계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수익금
3. 「광명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및 「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」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 중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일반회계 전출금
4. 그 밖에 수입금

② 기금은 50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. <신설 2024. 11. 12>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주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·개발 및 그 보급사업
2. 주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
3.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사업
4. 시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 지원사업
5.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.

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7. 26, 2003. 11. 18, 2006. 12. 15, 2010. 11. 25, 2014. 8. 14, 2016. 12. 20, 2018. 8. 30, 2019. 12. 20>

1. 기금운용관 : 경제문화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 : 체육진흥과장
3. 기금출납원 : 해당업무 팀장

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기금관리대장(별지 제1호 서식)
2. 기금지급대장(별지 제2호 서식)
3. 현금출납부(별지 제3호 서식)

제4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<개정 2017. 10. 10, 2022. 11. 22>

[본조신설 2013. 10. 8]

제5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전문개정 2008. 8. 11]

제5조의2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5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9. 11. 15>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1. 15, 2022. 11. 22>

1. 체육업무담당 국장, 기금총괄업무 담당 부서장
2.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
3. 광명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
4. 체육분야 관련 대학교수 및 체육단체 임직원

5.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전문체육인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,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. <개정 2010. 11. 25>

[본조신설 2008. 8. 11]

제5조의3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08. 8. 11]

제5조의4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7. 31>

[본조신설 2008. 8. 11]

제5조의5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[본조신설 2008. 8. 11]

제5조의6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 8. 9, 2018. 7. 31>

[본조신설 2008. 8. 11]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기금운용계획(계획변경포함)안에 관한 사항
2. 기금 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조(기금운용의 계획)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결산)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 7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5>

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24. 11. 12>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7. 26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3. 11. 1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6. 12. 15 조례 제1480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>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내지 ⑫ 생략

⑬ 「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“민간협력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⑭ 내지 ⑰ 생략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8. 11 조례 제160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⑳ 까지 생략

㉑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체육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제3호 중 “체육관련담당”을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제5항 중 “해당업무 담당”을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㉒ 부터 ㉓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6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㉖ 부터 ㉗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10. 8 조례 제196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㉕ 까지 생략

㉖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시민행복국장”으로 한다.

㉗ 부터 ㉛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12. 20 조례 제222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체육진흥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⑧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10. 10 조례 제2300호, 존속기한 연장 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㉖ 까지 생략

㉗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1호 중 “시민행복국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㉘ 부터 ㉚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1. 15 조례 제25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2. 20 조례 제2560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㉑ 부터 ㉓ 까지 생략

㉒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문화체육과장”을 “체육진흥과장”으로 한다.

㉓ 부터 ㉕ 까지 생략

부칙 <2022. 3. 2 조례 제2840호, 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27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1. 22 조례 제290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. 11. 12 조례 제317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| 기 금 관 리 대 장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연월일 | 예 금 | | | | 인 출 | | 잔 액 |
| | 재 원 | 예금종류 | 금 액 | 이 율 | 적 요 | 금 액 | |
| | | | | | | | |

[별지 제2호 서식]

| 기 금 지 급 대 장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연 월 일 | 적 요 | 채 주 | 지 급 액 | 잔 액 |
| | | | | |

[별지 제3호 서식]

| 현 금 출 납 부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연 월 일 | 적 요 | 수 입 | 지 출 | 잔 액 | 결 재 | |
| | | | | | 담 당 | 과 장 |
| | | | | | | |